

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

온타리오 고용기준법(Employment Standards Act)에 관하여

ESA라고 불리는 고용기준법 2000(Employment Standards Act, 2000)은 온타리오 주 내의 직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. **여러분이 온타리오 주에서 일하고 있다면 ESA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.** 이 법은 연방정부 고용인과 기타 몇몇 특수 부문의 고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법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예외 및 특별 규정이 있으며, 모든 고용인에게 ESA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직장에서의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

고용주는 고용인이 ESA 권리를 요구하거나 그에 대해 질문한다는 이유로 고용인을 위협하거나, 해고하거나, 정직시키거나, 기타 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,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. 고용주가 ES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노동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.

비고: 노조에 소속된 고용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경우, 노동부에 연락하기 전에 노조 대표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.

근무시간 - 일반적으로, 고용인에게 다음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.

- 일간 한계: 하루 8시간, 또는 규정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그 근무시간. 고용인의 서면동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일간 한계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.
- 주간 한계: 주 48시간. 고용인의 서면동의 요건이 충족되고 고용주가 고용기준국장(Director of Employment Standards)의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 4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. (허가 신청이 30일 이상 미결 상태인 경우에는 제한된 초과근무 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.)

휴식시간 - 일반적으로, 고용인의 최소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하루 11시간 연속 휴식
- 주 24시간, 또는 2주에 48시간 연속 휴식

초과근무수당 - 대부분의 고용인은 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. 초과근무수당은 최소한 정규 임금의 1.5배이어야 합니다.

최저임금 -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저 시간급을 말합니다.

2007년 2월 1일	2008년 3월 31일	2009년 3월 31일	2010년 3월 31일
\$8.00/시간	\$8.75/시간	\$9.50/시간	\$10.25/시간

비고: 학생, 주류 서빙 종사자, 재택근무자, 사냥 및 낚시 안내인의 최저임금은 다릅니다.

급여일 - 고용인은 일정 급여일에 급여를 받아야 하며, 해당 급여기간에 대한 급여 및 각종 공제 내역서를 받아야 합니다.

휴가 및 급여 - 대부분의 고용인은 12개월마다 최소한 2주의 휴가를 취득합니다. 고용인은 최소한 총 급여액의 4%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공휴일 - 온타리오 주는 매년 9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(1월 1일, 가족의 날(Family Day), 성금요일, 빅토리아 데이, 캐나다 데이, 노동절, 추수감사절, 크리스마스, 12월 26일). 대부분의 고용인은 이 공휴일에 공휴일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.

휴가 - 자격이 있는 고용인은 다음과 같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쉴 수 있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출산휴가 17주
- 육아휴가 35-37주
- 본인의 질병, 상해 또는 긴급의료를 요하는 상황, 가족의 사망, 질병, 상해, 긴급의료를 요하는 상황, 긴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, 매년 10일의 개인 비상휴가
- 중병으로 26주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큰 가족, 또는 고용인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을 돌보거나 부양해야 할 경우, 26주 동안 8주의 가족의료휴가
- 신고된 비상휴가
- 재향군인 휴가

해고 통지 및 수당 - 일반적으로,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이 종료될 경우,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, 통지 대신 해고수당을 지급하거나,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.

청소년 근로자 -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:
www.labour.gov.on.ca/english/site/youngworkers

이 포스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ESA 권리도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노동부(Ministry of Labour)에 문의하십시오

416-326-7160, 무료전화 1-800-531-5551, 또는 Hearing Impaired TTY(청각장애인용 전화) 1-866-567-8893으로 전화하십시오.

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노동부에 이메일로 연락하려면 www.labour.gov.on.ca를 방문하십시오.

고용기준 배상청구서 양식은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(ServiceOntario Centre)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센터를 찾으려면 1-800-267-8097로 문의하십시오.

Version 4.0